<u>「 글로벌페이스마트카드」 이용약관 개정대비표</u>

1. 개정시행일: 2020.9.9(수)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 7조(충전의 제한) ①~②(생략) ③ 충전 및 재충전시 최저 한도는 미화 10 불 상당액, 최대 한도는 미화 10,000 불 (잔액기준)상당액(거래취소, 환불 등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는 예외적용)으로 미화 10,000 불 이내 국내외 충전이 가능하며, 누적충전금액이 미화 10,000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충전 잔액이 미화 10,000 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누적충전금액은 영업점 방문시점으로 재산정 됩니다.단, 영업점 방문 이후 미화 10,000 불 범위내 잔여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비대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④~⑤(생략)	제 7조(충전의 제한) ①~②(현행과 동일) ③ 충전 및 재충전시 최저 한도는 미화 10 불 상당액, 최대 한도는 미화 10,000 불(잔액기준)상당액(거래취소, 환불 등으로 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는 예외적용)으로 미화 10,000 불이내 국내외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잔액이 미화 10,000 불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점 및 비대면(모바일뱅킹)에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④~⑤(현행과동일)	외국환거래규 정 제1-2조 용어의정의 ④ 항 개정사항 반영 누적충전금액 미화 10,000 초과시 영업점내점 조항삭제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적용

본 품의로 금융감독원 앞 약관변경 신고를 위한 대외발신 공문 협의를 갈의함